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신규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0 조 (수업일수 등) 1~2 (생략)</p> <p>3.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가.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p>나. 신청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단,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전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학교교육과-7384(2020.5.26.) <p>다. (생략)</p>	<p>제 10 조 (수업일수 등) 1~2 (생략)</p> <p>3.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①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당해연도 지침에 따른다.</p> <p>(※근거: 당해연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및 기타사항은 관할청의 당해연도 지침에 의함 <p>② 신청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단,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사전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p>③ (현행과 같음)</p>
<p>제 5 장 입학 . 재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p> <p>제 12 조 (입학 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p> <p>제 13 조 (생략)</p> <p>제 14 조 (재입학) 만 3.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p> <p>제 15 조 (생략)</p> <p>제 16 조(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p>	<p>제 5 장 입학 . 재입학 . 전학 . 휴학 . 전·출입. 퇴학 . 수료 및 졸업</p> <p>제 12 조 (입학 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p> <p>제 13 조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 (재입학) 3,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p> <p>제 15 조 (현행과 같음)</p> <p>제 16 조 (휴학) 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p>

<p>서 및 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p>제 17 조 (수료 및 졸업)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p>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전·출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며,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처리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 전입일은 월요일로 처리 ②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의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2. 학년도 종료 시점(2월 말)을 기준으로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기재하고 2월 말 기준 전출, 3월2일 기준 전입 처리한다. 3. 졸업·수료식 이후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전출교의 수료 및 졸업은 삭제하고 전입교에서 수료 및 졸업으로 처리한다. 4. 전·출입 시 학적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부모가 해당 사항을 유치원에 알리도록 사전 안내한다. <p>제 18 조 (퇴학)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p>제 19 조 (수료 및 졸업)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	--

<없 음>

<신 설>

제 7 장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제 21 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2 조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7.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 23 조 (조언 및 상담)

1.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p>2.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3.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4.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5.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6. 제5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p> <p>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p> <p>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p> <p>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p> <p>8.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24 조 (주의 및 훈육)</p> <p>1.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p> <p>2.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p> <p>3.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p> <p>4. 원장과 교원은 제1항~제3항에 따른 주의 또는 제23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조언으로 유</p>
--	---

	<p>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p> <p>5.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p> <p>6.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p> <p>7. 제6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8.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①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p> <p>②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p> <p>③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 공개의 우려가 있거나 교육활동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p> <p>9.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 25 조 (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p> <p>제 26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p> <p>1.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2.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
--	---

	<p>제 27 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 28 조 (이의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p>제 29 조 (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이동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활동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자리로 이동 ② 교실 외 지정된 다른 장소로 이동 ③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알린다. 2.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관계법령, 관할청의 지침을 따른다.
<p>제 18 조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제 7 장 규칙 개정 제 19 조 (규칙 개정)</p>	<p>제 20 조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제 8 장 규칙 개정 제 30 조 (규칙 개정)</p>